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1880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8구합5298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400,000원, 지방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6

육세 1,140,000원 합계 12,540,000원의 감액(과오납금반환)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2016. 8. 17."을 "2016. 3. 1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